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05
----------	------

2024년 2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자 : 신동원 의원 외 62명
나. 발의일 : 2024년 2월 5일
다. 회부일 : 2024년 2월 7일
라. 상정일 :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2월 2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동원 의원)

가. 주문

- 법정 기법정 기구인 동(洞) 단위의 방위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함.

나. 제안이유

- 1) 「예비군법」에서는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와는 별개로 독립된 동(洞) 단위의 방위협의회(이하 “동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2) 다만, 동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 3) 이에 따라 「예비군법 시행령」에서는 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규칙 제정을 통한 동방위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하고자 함.

3. 이송처

- 국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건의안은 「예비군법」에 따른 읍·면·동(洞)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이하 “동방위협의회”)에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건의하려는 것임.
- 현행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방위협의회의 경우, 읍·면·동장(이하 “동장 등”)이 의장이 되어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 위촉 등 업무를 총괄하는 등 동장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33조(방위협의회의 종류) ①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나눈다.

② 지역방위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각급 출장소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운영하고, 직장방위협의회는 직장(제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제35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방위협의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제36조(의장)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동방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세칙은 미비 상태로, 동방위협의회의에 대한 국가나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관리 및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예비군법 시행령」

제3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이에 대하여 비상기획관에서 국방부에 운영세칙 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바, 본 건의안을 통해 동방위협의회의의 정상적인 운영 기반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임.

* 「예비군법(시행령) 동방위협의회의 운영세칙 세부내용 제정 건의」 민방위담당관 -5570(2023.4.19.)

- 한편,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역방위협의회의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반면,

※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통합방위법」에 따라 해당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와 통합 운용 중

「통합방위법」

제7조(협의회의의 통합·운영) 중앙협의회의, 지역협의회의 및 직장협의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의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의

- 동방위협의회의 경우는 통합·운영 대상에서 배제되어 독립적 형태로 운영되는 이유로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외에도, 관리·감독 등 체계도 마련되지 못하여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한 운영과,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세부적으로 보면, 동방위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정기회를, 의장이 인정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를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 심의 사항이 주로 지역방위작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의제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회의 개최 명분이나 필요성 부족으로 심의 안건 없이 사실상 친목 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양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5.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제37조(회의)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 또한 관리·감독 기관의 부재로 인해, 법정 기구인 동방위협의회의 설치 현황, 위원 수, 회의 및 활동 실적 등 기초적인 운영 현황마저 파악되지 않고 있고,
- 나아가 동방위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동장이 아닌 동대장이 운영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법정 설치의무 기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동방위협의회의 운영 실태(예시)

- | | |
|-------------------------|------------------------|
| 1. 예비군 동대장에 의한 운영 | 2. 운영에 대한 지원 없이 회비로 운영 |
| 3. 심의안건 없이 친목 형태로 매월 개최 | 4. 동방위협의회의 미설치 동(洞) 발생 |

※ 출처: 본 건의안에 대한 비상기획관 검토의견서 중

- 따라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방위협의회의와 통합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동방위협의회의도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와 통합 운영하거나,
 - 상위 기관의 관리·감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동방위협의회의의 명확한 업무·역할 등을 부여하여 심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등 광역-기초-동방위 협의회의 간 연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이는바,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음.

< 비상기획관의 국방부에 대한 주요 건의 사항(2023.4.19.) >

1. 예산지원의 주체 설정

: 예비군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세칙으로 그 운영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세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동방위협의회의”에 대한 지원 근거가 현실적으로 부재한 실정에 따라 예산 지원의 주체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관리·감독 기관 지정

: 동방위협위회는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되어 의장(동장) 책임하에 운영되는 협의기구로서, 지자체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동방위협의회의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주체 지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통합방위협의회의와 통합운영 방안 검토

: 통합방위협의회의는 통합방위법(제7조)에 따라 구성과 기능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방위협의회의 및 민방위협의회의를 통합운영 할 수 있으나, 동방위협의회의는 통합운영의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이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에 통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방위협의회의를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요청함

※ 지역방위협의회의의 지원 및 통합대상

구 분	광역자치단체 방위협의회의	기초자치단체 방위협의회의	동방위협의회의
지원대상	지역군사령부	여단 및 대대	지역 예비군
통합대상	광역자치단체의 통합방위협의회의	기초자치단체의 통합방위협의회의	

※ 비상기획관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비상기획관 검토의견 (민방위담당관-3129, 2024.2.15.)

- 동방위협위원회는 예비군법(제14조 3)에 따라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해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시행령 제33조)되어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법령(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불가한 실정임
- 또한 세부지침 및 주관기관(국방부)의 관리가 없어 협의회 설치 목적과 달리 친목 단체 형태로 변질되는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동방위협의회의 현실태

- | | |
|---------------------------|------------------------|
| 1. 동방위협의회의 예비군 동대장에 의해 운영 | 2. 운영에 대한 지원 없이 회비로 운영 |
| 3. 심의안건 없이 친목 형태로 매월 개최 | 4. 동방위협의회의 미설치 동 발생 |

- 이에 따라 동방위협의회의가 정상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군법 시행령 운영세칙 (제38조) 제정을 통한 「동 단위 방위협의회의 운영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에 동의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신동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05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 신동원, 강석주, 고광민, 구미경, 김경,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승진, 박영한, 박중화,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도, 이병윤, 이상욱, 이새날, 이숙자,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정준호, 정지웅,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허훈, 황철규
의원(63명)

1. 주문

- 법정 기구인 동(洞) 단위의 방위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예비군법」에서는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와는 별개로 독립된 동(洞) 단위의 방위협의회(이하 “동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다만, 동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 이에 따라 「예비군법 시행령」에서는 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규칙 제정을 통한 동방위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4. 이송처

- 국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예비군법」(제14조의3)에서는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읍·면·동을 포함한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33조(방위협의회 종류) ①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 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나눈다.

② 지역방위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 단위로 설치·운영하고, 직장방위협의회는 직장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제35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방위협의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제36조(의장)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별개 단위로 설치된 동(洞) 단위의 방위협의회(이하 “동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를 각급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동방위작전에 대한 독립된 의결기구로서 동장이 의장이 되어 운영되는 이유로, 국가기관이나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방위협의회는 월례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동장 및 동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 공유와 경찰관계자의 치안 관련 현황보고 등을 위한 주기적 간담회 개최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운영 비용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회원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예비군법 시행령」(제38조)에서 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인바,

동방위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규칙 제정 등을 통한 국방부의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3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024.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